(1) 재류 수속

여기서는 재류관리제도의 대상자인 '중장기 재류자'에 대해 설명합니다.

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 재류하는 외국인(중장기 재류자)에게는 '재류카드'가 교부됩니다.

중장기 재류자란,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.

- (1) 재류기간이 '3 개월' 이내인 사람
- (2) 재류자격이 '단기재류'인 사람
- (3) 재류자격이 '외교' 또는 '공용'인 사람
- (4) 법무성령으로 (1)~(3)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
- (5) 특별영주자
- (6) 재류자격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

【새롭게 일본에 입국하여 이즈미사노시에 거주할 경우】

수속 흐름

<출입국항에서>

입국 심사

상륙허가에 따라 중장기 재류자가 된 사람에게는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.

나리타 공항, 하네다 공항, 중부공항, 간사이 공항, 신치토세 공항, 히로시마 공항, 후쿠오카 공항에서 입국

→그 자리에서 교부

그 외의 공항 및 해항에서 입국 → 이즈미사노 시청에 '전입신고'를 제출하면 신고한 주거지 앞으로 발송됩니다.

<이즈미사노 시청 시민과에서>

주거지 신고

전입신고 제출

※주거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에 수속을 해야 합니다.

I

주민등록

주민표 작성

마이넘버 교부

① 재류카드





재류 카드에 기재되는 사항

얼굴사진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·지역, 주거지, 재류자격, 재류기간, 근로 제한의 유무 등 재류기간이 만 16 세 미만인 사람의 재류카드에는 얼굴사진이 없습니다.

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하며, 경찰관, 입국심사관 등이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.

휴대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. 아울러 만 16 세 미만인 사람은 휴대 의무가 면제됩니다.

유효기한

<영주자>

만 16 세 이상인 사람: 교부일로부터 7년

만 16 세 미만인 사람: 만 16 세가 되는 생일날까지

<영주자 외>

만 16 세 이상인 사람: 재류기간 만기일까지

만 16 세 미만인 사람: 재류기간 만기일과 만 16 세가 되는 생일 중 빠른 날까지

재류카드에 관한 신고

중장기 재류자는 재류카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
<거주지에 관한 신고>

거주시에 관한 변경은 이즈미사노 시청 시민과에 신고합니다(거주지를 정한 후, 또는 변경한 후 **14**일이내).

- 새롭게 일본에 입국하여 이즈미사노시에 거주할 경우 준비물: 여권, 재류카드(입국 시 교부되었을 경우)
- 재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어 새롭게 중장기 재류자가 되었을 경우 준비물: 여권, 재류카드
- 이사했을 경우

1.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수속

준비물: 재류카드

※이즈미사노시가 아닌 곳에서 이즈미사노시로 이사한 경우에는 재류카드와, 이전에 거주한 지역의 관청에서 전출신고를 제출시 교부된 전출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★수속, 문의처

시민과

전화번호: 072-463-1212 (내선: 2111 ~ 2118)

<거주지 변경 이외의 신고>

거주지 이외의 변경은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신고합니다.

- 성명, 국적·지역이 변경되었을 경우
- 재류카드의 유효기한을 갱신할 경우(영주자, 만 16 세 미만의 사람)
- 재류카드를 분실하거나,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
- 근로자격(일부를 제외한다)을 가지고 일본에 재류하는 사람이나 유학생 등: 소속 기관(회사, 학교)의 명칭 변경, 소재지 변경, 도산, 고용기간 종료, 퇴학, 졸업, 전직, 전학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
- 재류자격이 '가족재류', '일본인의 배우자 등'인 사람: 배우자가 사망했거나, 이혼했을 경우

재류기간을 연장할 경우나 재류자격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, 혹은 재류자격이 '유학'인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등에도 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에서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.

★수속, 문의처

오사카 출입국 재류관리국

전화번호: 06-4703-2115

외국인 재류종합정보센터 오사카

전화번호: 0570-013904 (03-5796-7112)

http://www.immi-moj.go.jp/info/index.html

☆참고 사이트

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

http://www.immi-moj.go.jp/korean/index.html

② 재입국 허가

일본에서 출국하기 전에 '재입국 허가'를 취득하면, 재입국 후에도 출국 전과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.

한 번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와, 허가 기간 안에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재입국 허가가 있습니다. 재입국이 가능한 기간은 본인의 재류기한 내이며, 최대 5년까지입니다.

유사 재입국 허가

일본에서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, 사전에 '재입국 허가'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단,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류기한이 만료가 될 경우에는, 재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 해야 합니다.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, 재입국 출국용 ED 카드의 유사 재입국 허가로 인한 출국의 의도 표명 란에 체크하여 재류 카드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.

http://www.immi-moj.go.jp/re-ed/EDcard leaf ko.pdf

☆참고 사이트

법무성 '출입국재류관리청' 『새로운 재류관리제도 시작!』

http://www.immi-moj.go.jp/newimmiact 1/ko/index.html